

무배당 메리츠 신탁제공용 이월보증형보험

보험약관

(메리츠퇴직연금-R51000/51010/51020/51030/51040/51050-2305A)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무배당 메리츠 신탁제공용 이월보증형보험

제1조(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액 운용의 일환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퇴직연금 이월보증형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부담금’이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보험금’이라 함은 이월보증기간 만기시점에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지급하는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액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회사의 수행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부담금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 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기간)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8조(부담금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9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청약서(청약서 부분)의 경우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계약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라 적립액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제13조 ~ 제14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3조(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부담금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하며, 이율보증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일단위 특정만기 중 하나의 기간으로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 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은 설정된 날에 회사가 결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액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액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적용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4조(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 ① 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출하

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50%」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제12조(계약의 해지)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2.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하는 경우

제15조 ~ 제16조는 이율보증형 II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 II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15조(이율보증형 II의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부담금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하며, 이율보증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일단위 특정만기 중 하나의 기간으로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 시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은 설정된 날에 회사가 결정한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액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액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적용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6조(이율보증형 II 상품의 해약환급금)

- ① 이율보증형 II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출하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 × 60%」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제12조(계약의 해지)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2.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하는 경우

제17조 ~ 제18조는 이율보증형Ⅲ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Ⅲ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7조(이율보증형Ⅲ의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부담금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이율보증형Ⅲ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하며, 이율보증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일단위 특정만기 중 하나의 기간으로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 시 이율보증형Ⅲ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Ⅲ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은 설정된 날에 회사가 결정한 이율보증형Ⅲ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액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액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Ⅲ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적용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Ⅲ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8조(이율보증형Ⅲ 상품의 해약환급금)

- ① 이율보증형Ⅲ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출하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Ⅲ 적용이율 × 20%**」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제12조(계약의 해지)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2.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하는 경우

제19조(적용이율의 적용)

- 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 및 이율보증형Ⅲ 적용이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합니다)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하되, 각 상품별 적용이율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각 상품별 적용이율 조건]

이율보증형Ⅲ 적용이율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 할 수 있습니다.

[년단위 만기]

$$\circ \text{지표금리}(\%) = (\text{회사채수익률} + \text{국고채수익률} + \text{통화안정증권수익률}) / 3$$

[일단위 특정만기]

- 일단위 특정만기의 지표금리는 지정한 보증기간의 연미만 기간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인 경우 절사, 6개월 초과인 경우 절상한 후 해당기간의 연단위 지표금리를 적용
 - 1년초과 1년6개월 이하 : 1년 지표금리 적용
 - 1년6개월초과 2년미만, 2년초과 2년6개월이하 : 2년 지표금리 적용
 - 2년6개월초과 3년미만, 3년초과 3년6개월이하 : 3년 지표금리 적용
 - 3년6개월초과 4년미만, 4년초과 4년6개월이하 : 4년 지표금리 적용
 - 4년6개월초과 5년미만 : 5년 지표금리 적용

- 주) 1. 회사채수익률 : 국내 채권평가회사(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매일 공시하는 n년만기 회사채(무보증, AA-)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함
2. 국고채수익률 : 국내 채권평가회사(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매일 공시하는 n년만기 국고채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함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 : 국내 채권평가회사(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함

4. 평균값 : 매월 1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 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함
5. n년만기 : 회사채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의 만기기간은 이율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 ③ 적용이율은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적용합니다.
- ④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 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한 적용기간 이후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합니다.
- ⑤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국내 채권평가회사가 매일 공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없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이율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③ 회사가 제14조(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제16조(이율보증형Ⅱ 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제18조(이율보증형Ⅲ 상품)의 해약환급금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상품별 중도해지이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 상품별 중도해지이율 조건]

이율보증형Ⅱ 중도해지이율 > 이율보증형 중도해지이율 > 이율보증형Ⅲ 중도해지이율

- ④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1%」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1조(해지시 구비서류)

제12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청구서(회사양식)’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2조(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액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특별계정의 자산의 종류는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7조(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8조(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단, 계약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